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5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송명화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경우,
김소양, 김제리, 김화숙,
박기열, 봉양순, 오현정,
이광성, 이병도, 이상훈,
이정인, 채유미, 최 선,
한기영, 홍성룡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20년 7월,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’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이 전략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탄소중립’이라는 용어를 정의함(제2조제4항)
- 나.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‘2050년 탄소중립’으로 설정함(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”을 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,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탄소중립”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‘0’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”을 “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4. "기후변화 취약성"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.</p> <p>5. "승용차마일리지"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6. "에코마일리지 제도"란 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 ① (생략)</p> <p>② 시는 <u>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</u></p> <p>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·수당·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"탄소중립"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— <u>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-----.</u></p> <p>제14조(수당 등)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